

『구미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개정에 따라 구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중 관련근거 법령 조항을 정비하고
- 재정보증 한도액 상향조정으로 재정보증 운영에 현실화를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 기준을 개정함(안 제4조)
 - 110만원 이상 → 1천만원 이상
- 그 밖에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등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
 - 「지방재정법」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개정에 따라 구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중 관련근거 법령 조항을 정비하고 재정보증 한도액 상향조정으로 재정보증 운영에 현실화를 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써,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4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,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를 하는 내용임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「지방재정법」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개정에 따라 구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중 관련근거 법령 조항을 정비하고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재정보증 운영 현실화에 기여하고,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